

미쉐린 일반판매조건

타이어용

발효일: 2024 년 7 월 1 일

전문

본 "일반 조건"("본 조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 길 12 에 본점 주소를 두고 있는 미쉐린코리아 주식회사("미쉐린")가 주문서에 명시된 세부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을 비독점적으로 공급 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품을 제공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제품에 대한 주문 또는 본 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은 본 조건의 조항을 조건 없이 모두 수락하는 것으로 본다. 미쉐린과 고객은 이하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로 칭한다.

이 일반약관(GTC)은 미쉐린의 제품 판매를 위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또는 총칭하여 '계약'이라 하며, 참조에 의해 상업 계약, 영업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 또는 기타 합의, 계약서, 견적서 또는 구매 주문서 및 모든 관련 첨부문서나 수정계약에 포함된다.

1. 해석

다음의 용어 정의와 규칙이 본 계약에 적용된다.

1.1. 정의

계열사: 당사자들중의 하나에 의해 통제되거나 당사자들 중 하나를 통제하거나 또는 당사자들 중 하나의 공동 통제 하에 있는 주체

영업일: 미쉐린이 위치한 국가에서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의미함.

일 또는 역일: 모든 역일(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

영업 프로그램: 고객에게 제공된 최신 미쉐린 권장소비자 가격표와 적용가능한 브랜드 프로그램/영업 조건

기밀 정보: 노하우, 지식재산권, 아이디어, 도면, 디자인, 개념, 샘플, 모델, 계획, 데이터, 소프트웨어 및 합리적인 사업자가 기밀로 간주할만한 정보로서 계약 일자 이전 혹은 이후에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소통하였거나, 타방 당사자의 사업장 내에서 직, 간접적으로 입수한 기타 기술, 운영, 재무 또는 영업 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비공개 및 독점 정보

지배, 통제, 관리: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자본 일부를 소유하거나 계약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과

정책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나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

고객: 미쉐린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고객

고객 자료: 고객의 기술 자료 혹은 개인 정보

전자 전송: 종이의 물리적 전송을 직접적으로 수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통신의 모든 형태로써, 수신자가 보관, 검색 및 검토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 위 수신자에 의해 종이형태로 직접 재생산될 수 있는 통신. 위 전송이 보안화되고 모든 조치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의해 추적되고 기록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한 기록을 수신자와 발신자가 보관, 검색 및 재생산해낼 수 있음.

불가항력 사안: 신의 행위, 전쟁, 팬데믹, 전염병, 테러, 시민 소요, 악의적인 파괴, 파업, 질병 발생, 봉쇄, 산업 조치, 운송 설비의 부족 또는 고장, 화재, 홍수, 가뭄, 극한 기상 조건, 법률 또는 정부 명령, 규칙, 규제, 지시의 준수와 같은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모든 상황 혹은 해당 당사자가 사건의 발생과 그것이 계약 이행 능력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발생 자체를 합리적으로 피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각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 상황

마크: 미쉐린 상표, 상호, 관습법상 권리, 로고, 슬로건, 표시, 도메인 네임, 하위 도메인, 키워드 및 관련 영업권

미쉐린 그룹: 23 Place des Carmes Déchaux 63000 Clermont Ferrand 에 주소를 둔 (등록 번호 855 200 887) Compagnie Generale des Etablissements Michelin 이 통제하는 조직

미쉐린 그룹 입장: 특정 국가에서 미쉐린 그룹 제품과 관련된 모든 직간접적인 상업 활동을 거부하고 금지 하는 입장(국가로의 또는 국내에서의 판매 및/또는 국가를 경유하는 수송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는 무역제재보다 더 제한적인 입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이나 부패 우려, 테러자금 조달에 관한 우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상업적 고려사항 및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고려에 기반한다. 이는 스페어 부품으로 판매되거나 상위 레벨의 어셈블리(장착된 유닛, 지상 차량, 비행기 등)에 내장되어 있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미쉐린이 직, 간접적 판매(국가간 경유 경우 포함)를 거부하고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이다. 위 국가 목록은 미쉐린의 단독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다.

주문: 2.3. 승인 조항에 따라 미쉐린이 승인한 시점에 미쉐린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의 상세 내역을 기재한 주문서

제품: 미쉐린이 제공하는 관련 주문에 명시된 모든 상품, 제품 및/또는 서비스

지역용 일반 조건: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에 첨부된 특정 지역 및/또는 국가에 고유한 조건

제재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조직 또는 단체: (i) 무역 제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 혹은 등재 되거나 (ii) 무역 제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되거나 등재된 사람이 소유, 통제 하거나 또는 (iii) 무역 제한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되거나 등재된 사람의 대리인

기술 데이터: 미쉐린이 제공하는 제품과 관련하여 고객 및/또는 미쉐린이 고객을 대신하여 입력한 타이어 및/또는 차량 및/또는 그 사용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데이터(개인 정보 제외) 및 고객사의 차량 또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모든 권장 사항

무역 제재: 무역 제재 (포괄적 또는 부문별 금지 조치 및 제한 당사자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수출 통제(군사적 또는 이중 사용 용도 제품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1.2. 지역용 일반 조건은 본 조건의 일부이며 본 계약 본문에 모두 명시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본 조건에 대한 준용은 지역용 일반 조건에 대한 준용을 포함한다.

1.3. 문맥상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어느 한 성별에 대한 언급은 다른 성별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1.4. 입법 또는 입법 조항에 대한 언급은 개정, 연장 혹은 재제정된 것에 대한 언급이다.

1.5. 현지 법률 및/또는 규정에 대한 어떤 언급이라도 본 조건에 첨부된 지역용 일반 조건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1.6. 본 조건과 충돌되는 경우 지역용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2. 주문 발주, 수락, 인도

2.1. 주문 발주 고객은 다음 방법으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다. (i) 미쉐린의 지정 주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주문하는 것이 고객의 필요시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주문하는 것을 제한 하지 않음. (ii) 이메일 주문, (iii) 전화 주문, (iv) 미쉐린의 대리인 및/또는 (v) 미쉐린 고객 서비스를 통한 주문.

2.2. 주문 수락 모든 주문은 미쉐린의 단독 재량에 따라 수락된다. 미쉐린은 관련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단독 재량으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2.2.2. 제품의 재고와 공급에 따라 주문을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2.3. 고객 간에 또는 고객 간에 사용 가능한 제품을 자유롭게 할당할 수 있다.

2.3. 미쉐린은 주문을 이행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2.4. 현지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고객은 주문을 수정할 수 없다.

2.5. 주문 인도. 인도 일자 는 표시일 뿐이며 구속력은 없다.

2.6. 2.2.항의 주문 수락에 따라 운임이 선불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경우에 미쉐린은 미쉐린이 선택한 운송업체/배송업체를 통해 고객이 지정하고 당사자간에 합의된 승인 고객 위치로 제품을 인도한다. 제품은 분할 배송될 수 있다.

2.7. 고객은 미쉐린과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미쉐린이 지정한 창고로부터 상호 합의한 날에 미쉐린 제품을 단독 재량으로 수령할 수 있다.

2.8. 관련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미쉐린은 제 6 조 (고객의 제품 수락 또는 거부)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외하고 인도된 제품의 어떠한 반품 또는 교환에 응하지 않는다.

3. 권리 및 위험부담

3.1. 제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인도 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제품 인도는 제품이 i) 고객에게 배송된 경우 또는 (ii) 고객에게 운송하기 위해 고객이 선택한 운송업체에 배송된 경우 중 먼저 발생한 때 완료된다.

3.2. 관련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한, 제 4 조(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제품에 대한 권리는 제품에 대해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 및/또는 지고 있는 부채를 전액 지급하는 때 고객에게 이전된다.

3.3. 제 2 조 (주문 발주, 수락 및 인도) 및 제 3 조에도 불구하고, 미쉐린은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제품의 배송을 중단할 권리를 보유한다.

3.3.1 고객이 주문 발주에 따라 미쉐린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았을 경우

3.3.2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3.3. 고객이 파산 사건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및/또는

3.3.4. 관련 강행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4.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1. 본 계약 조항에 따라 고객은 미쉐린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고객의 이름과 이익으로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4.2. 고객의 의무는 아래와 같으나 아래 내용에 국한 되지 않는다.

4.2.1. 발주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

4.2.2. 미쉐린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의 지불

4.2.3. 미쉐린 제품 정보, 특히 제품의 보관, 관리 및 이송과 관련된 미쉐린의 정책에 따라 알맞게 취급하고 판매

4.2.4. 인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한 고객/최종 사용자의 편익을 위해 제품 유지관리

4.2.5. 관련 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영업 허가 및/또는 승인을 모두 획득하고 유지할 것

4.2.6. 회사의 마크 및 제품과 관련된 평판과 영업권을 향상시키면서 고객의 제품 판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4.3. 고객은 현재 유효한 미쉐린 그룹의 정책 및 때로 개정되는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4.4. 상호 의무. 각 당사자는 (i) 회사를 설립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설립되고 유효하게 존재하는 회사로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권능을 보유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ii) 본 계약이 당사자, 그 계열사 및/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모든 성질의 계약상, 재정적, 사업적 또는 법적 의무와 충돌하거나 그에 위배되거나 그에 대한 위반이 되지 않으며, 본 계약 유효 기간 동안 어느 당사자, 그 계열사 및/또는 직원도 본 계약 위반이나 기타 본 계약 의무 이행에 심각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으며, (iii) 모든 관련 법규를 항상 준수하겠으며, (iv) 본 계약상 약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 면허 및 승인을 단독 비용으로 취득하고 유지하겠으며, (v)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격, 경험,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계약 요건을 숙지한 직원을 배정할 것임을 보증한다.

5. 지식재산과 고객의 미쉐린 마크가 있는 “제품” 비방 금지.

5.1. 지식 재산

5.1.1. 국가와 지역을 불문하고 미쉐린은 해당 제품에 대한 마크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 및 지분을 보유한다. 고객은 방법을 불문하고 마크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훼손하지 않기로 한다.

5.1.2. 고객은 마크와 기타 본인이 유통하는 “제품”에 부착되는 명칭과 표시는 물론 미쉐린이 제공하는 프로모션 자료와 그 내용에 대해 그 어떤 소유권이나 권리도 없음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고객은 마크 또는 혼동을 유발할 만한 유사 명칭이나 로고, 표시를 등록하거나 그것에 대해 권리를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고객은 고객의 회사명이나 도메인 네임에 미쉐린 마크를 사용할 권한이 없다.

5.1.3. 해당 한도 내에서, 미쉐린은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광고, 프로모션, 판매, 유통하는 목적에 한해 마크를 고객의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 양도불가한 제한적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고 고객은 마크를 해당 목적 외에는 어떠한 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다. 미쉐린과 고객 간 계약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종료되면, 고객은 그 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마크를 이용하면 안 된다. 단 고객은 종료일 현재 재고에 남아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고객은 이유를 불문하고 종료 후 칠(7) 영업일 이내에 마크가 들어간 간판을 어디에 있던 모두 수거해 미쉐린에게 반환하고 미쉐린이 고객에게 제공한 문서도 모두 반환한다. 미쉐린은 위 명시된 기간이 끝난 후에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이를 철거할 권한이 있다.

5.1.4. 미쉐린은 상반되는 규정이 있어도 국가, 지역을 불문하고 제품과 프로세스, 서비스, 미쉐린이 제공한 문서와 내용을 보호하는 관련 특허권과 임시 특허권, 디자인, 저작권,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 기타 지적 재산권(이하 통칭하여 “기타 지재산”) 일체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 지분은 모두 미쉐린이 보유한다. 본 계약에서는 미쉐린이 구매한 제품을 의도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 제한 권리 외에 그 어떤 지식 재산권에 대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공여하지 않는다.

5.1.5. 관련 강행법규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제품의 공급이나 이용은 고객이 역설계나 분해, 기타 분석을 통해 제품과 관련된 방법론이나 조성, 제형, 부품, 프로세스, 소스 코드, 기타 기밀 정보를 획득하지 않는 것을 조건부로 한다.

5.1.6. 미쉐린 그룹 마크의 올바른 이용 지침이 적용되고 고객은 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지침은 www.michelin.com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객은 미쉐린이 이 지침에 반하는 광고나 마케팅, 프로모션 자료를 거부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미쉐린이 요청하면 해당 자료의 이용을 즉시 중단한다.

5.1.7. 고객에 의한 마크의 오용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며, 고객은 고객의 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해 미쉐린에게 배상하기로 동의한다.

5.1.8. 본 계약에 따른 고객별 마크 사용은 전적으로 미쉐린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5.1.9. 고객은 관련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행위를 알게될 경우 미쉐린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i) 마크와 관련하여 제 3 자에 의한 잠재적 또는 실제 침해, 침탈행위 또는 불공정한 경쟁, (ii) 마크의 유효성, 등록 및 사용에 대한 제 3 자의 주장 또는 조치, 또는 (iii) 마크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할 의도와 관련된 제 3 자 클레임 또는 조치

5.1.10.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12.6 항 및 12.7 항(종료 효과)이 적용된다.

5.2. 비방금지.

5.2.1. 고객은 마크나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방하거나 마크 또는 “제품”의 명성을 훼손하지 않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은 공식 성명이나 댓글, 보도자료,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또는 “제품”, 특히 (i)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기술, 내구성, 용량 (ii) 마크의 유효성이나 등록, 소유권 (iii) 미쉐린 또는 미쉐린의 대표자, 직원, 도급업자, 에이전트, 서비스 사업자의 평판을 부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5.2.2. 고객은 미쉐린, 마크,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명성이나 평판을 훼손할 수도 있는 광고나 홍보는 그 어떤 것도 추진하지 않기로 한다.

6. 고객의 제품 인수 또는 거절

6.1. 고객은 “제품”을 배송 받으면 하자 여부(특히 주문한 수량이나 색상, 품질, 발주 종류, 오염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

6.2. 인도 시 고객이 확인한 모든 결함은 (i) 인도받을 당시 제 3 자 운송업체 (운송장에 서면 의견 기재) 및 (ii) 미쉐린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3. 관련 강행법규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보이지 않은 결함 혹은 인도 후 확인된 결함은 현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러한 결함에 대해 알게 되는 즉시 미쉐린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6.4. 미쉐린은 제 6 조에 따라 고객이 확인한 모든 결함을 검증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법이 허용 하는 한, 하자에 대한 고객의 구제는 미쉐린이 재량으로 결정한다.

6.5. 위 6.2. 및 6.3.항의 경우, 제품은 인도 시 또는 고객이 인도 영수증에 서명한 때 고객이 인도를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6.6. 위 제 6 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의 결함에 대해 미쉐린에 대한 클레임 또는 책임을 모두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7. 가격, 청구 및 세금

7.1. 가격 고객이 제품에 대해 지급하는 가격은 영업 프로그램에서 정해진 선적되고 수거된 날의 가격 또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서비스가 이행된 일자에 유효한 영업 프로그램 조건 하의 가격이다.

7.2.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미쉐린은 사전 통지 없이 (i) 미쉐린 공급가 및/또는 (ii) 미쉐린이 배포하는 기타 권장 소비자 가격 또는 판매 관련 자료를 변경할 수 있다.

7.3. 미쉐린은 고객이 미쉐린에 지불해야 하는 미쉐린 제품의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고객은 미쉐린 제품을 재판매할 가격을 독자적으로 결정 한다.

7.4. 청구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관련 세금, 관세, 수수료, 보너스, 인센티브, 고객과 미쉐린간의 영업 프로그램(해당할 경우) 에 포함 되어 있는 기타 특약 사항을 포함하여 제품의 대금을 청구한다.

7.5. 세금 모든 가격은 관련 세금, 관세, 수수료는 별도다.

7.6. 고객이 미쉐린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은 고객의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에서 재판매 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을 위한 것이며, 고객은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러한 재판매 거래에 따른 모든 판매세 또는 사용세 또는 타이어 폐기물/재활용 수수료를 거래시 징수하거나 송금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증 및 인증한다. 고객은 미쉐린에게 관련 증빙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 고객이 과세대상 용도로 사용한 제품 또는 기타 유형 재산과, 재판매 대신 또는 재판매 전에 세금 또는 수수료가 면세된 품목에 대해, 고객은 해당 과세 당국에 타이어 폐기물/재활용 수수료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세금을 적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은 미쉐린에게 이러한 의무사항 이행을 통지해야 하고, 면세처리된 제품에 적용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 미쉐린에게 지불한다.

8. 결제

8.1. 고객은 미쉐린이 고객에게 보내는 청구서에 따라 또는 미쉐린이 단독 재량으로 규정한 다른 방법에 따라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8.2.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고객이 현금 결제 혹은 그 외 수단으로 선결제를 하더라도 가격 할인이 주어 지지는 않는다.

8.3. 고객이 수표 혹은 기타 유통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은 수표 또는 증서가 승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수표 또는 유통증권의 금액은 미쉐린에서 정한다.

8.4. 지급일은 청구서에 명시된 미쉐린 은행 계좌로 자금이 입금된 일자이다.

8.5. 고객이 미쉐린 청구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서 일자 또는 크레딧 문서 일자로부터 30 일 이내 미쉐린에게 통지하고 청구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해당 하는 금액은 미쉐린에게 지급해야 한다.

8.6. 본 문서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미쉐린은 언제든지 그리고 단독 재량으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8.6.1. 지불 조건의 설정 및 수정

8.6.2. 고객에게 공개 계정 거래 신용의 연장을 허가하거나 중단

8.6.3. 직불금, 선불지급, 배송시 현금 또는 배송을 위한 현금 지급, 배송에 대한 기타 담보 요구

8.7. 미쉐린이 고객에게 신용판매를 결정 할 경우, 미쉐린은 고객에게 부여된 신용 한도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모든 담보를 완전하고 재량적으로 요청할 권리를 보유 하며, 그러한 담보는 본 계약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혹은 계약이 수정된 경우 수정된 계약에 따른 일자까지 그 유효성을 유지해야 하며 고객은 본 계약에 포함된 모든 의무를 적절히 준수해야 한다.

8.8. 미쉐린은 본 계약의 조항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고객한테 요구할 수 있다. 미쉐린이 고객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보증을 받을 때까지 미쉐린은 본 계약에 따른 고객의 특권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권리가 있다.

8.9. 법에 의해 허용된 상계 또는 회수의 권리 외에도, 미쉐린은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재량으로 다음 사항을 적용할 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

8.9.1. 미쉐린 또는 미쉐린 계열사가 다른 계약에 따라 고객(또는 고객과 관련된 모든 개인 또는 조직)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모든 영업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되거나 지급되는 크레딧, 보너스 또는 리베이트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음)

8.9.2. 본 계약에 따라 미쉐린에게 지불 해야 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고객이 지불한 대금 또는 계약상 고객에게 발행한 크레딧

8.10. 고객은 미쉐린이 본 계약, 영업 프로그램, 보안 또는 신용 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계약을 이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미쉐린에게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을 변제해야 한다.

8.11. 고객이 본 계약 또는 기타 계약 관계에 따라 미쉐린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계약이 종료되는 즉시 지불되어야 한다.

9. 지연, 미지급 또는 재정 상태 변동

9.1. 지연, 미지급 8.5 항에 따라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기한까지 미쉐린에게 전액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본 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된다. 따라서, 고객이 전액 지불을 하지 않았을 경우, 본 계약 및 관련 법률에 따른 구제수단과 별개로,

9.1.1. 미쉐린은 지연 이자를 부가 할 수 있다.

9.1.2. 관련 강행법규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미쉐린은 단독 재량으로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9.1.3. 미쉐린은 관련 강행법규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단독 재량으로 고객에 대한 제품의 배송을 중단하거나, 미배송 주문을 취소하거나, 추가 제품의 배송을 거부하거나, 서비스의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9.1.4. 관련 강행법규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품을 재판매할 고객의 권한은 자동으로 종료된다.

9.1.5.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미쉐린은 고객이 보유중인 제품이 대금 미지급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품을 회수하고 제품을 복원하는 모든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미지급 제품의 반환은 미쉐린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후 채무를 불이행한 고객이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9.1.6.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기타 계약 관계에 따라 고객이 미쉐린에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9.2. 미쉐린이 지연금을 수락하는 경우라도 이는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지불 조건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9.3. 재정상태 변동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하는 한, 다음의 경우 미쉐린은 주문 배송을 보류 하거나 배송을 재개하지 않을 수 있다.

9.3.1. 고객에 대한 파산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고객과 미쉐린 간에 제품인도에 대한 상세히 기술한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9.3.2. 미쉐린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고객의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경우

9.4. 제 3 조(권리 및 위험)의 조건에 따라 제품을 재판매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이러한 중단과 동시에 즉시 소멸된다. 위 경우, 미쉐린은 대리인을 통해 고객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쉐린이 해당 유치권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하고 집행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를 허용해야 한다.

10. 윤리와 준법

10.1.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 또는 본 계약 미체결 시 고객의 “주문”일 현재, 각 일방은 조직 내 부패를 탐지하고 청렴 문화를 고취할 수 있는 반 뇌물수수 및 반부패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시행, 유지하기로 한다. 각 일방은 뇌물과 부패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에 동의한다.

10.2. 각 일방은 사업상 또는 그 외 부적절한 우위를 획득 또는 유지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민간 직책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3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부당한 금전이나 기타 편익을 (i) 제안, 약속, 제공하거나 (ii) 제안, 약속 또는 제공을 시도 또는 공모하여 그 공무원 또는 민간 직책자 또는 그 대리인, 또는 3자의 대리인이 공적 임무와 관련하여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한다. 미쉐린은 위 약속의 준수 여부를 준법 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3. 제 10 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고객이 지키지 못할 경우 고객은 즉시 미쉐린에게 알리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미준수의 시정을 시도하기로 한다. 미쉐린은 이와 별개로 주문 또는 본 계약 및/또는 당사자간의 계약 종료를 포함 해서 부패 위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 무엇이든 취할 권리가 있다. .

10.4. 고객은 반부패, 반뇌물수수, 자금세탁 방지, 사기, 보건안전, 환경 (환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야 하며, 특히, 이에 국한되지 않지만 삼림 벌채, 화재 및 토양 침식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여야 한다), 노동법, 인권, 괴롭힘, 차별 관련 법규를 비롯해 관련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본인의 거래상대(고객, 공급업자)와 하도급업자도 모두 그렇게 하도록 관리한다.

10.5. 고객은 청렴하고 윤리적으로 투명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인권과 노동, 환경, 윤리, 사기, 뇌물 수수 및 부패방지 기준 분야에서 근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쉐린은 미쉐린 윤리 강령 및 윤리성을 위반 했을시 사용할 수 있는 Ethics line 을 고객에게 제공한다(링크: <https://ethique.michelin.com/en/>). 제보는 <http://michelingroup.ethicspoint.com/>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1. 무역 제재에 대한 그룹의 입장

11.1. 고객은 제품의 공급이나 판매, 이전, 환적, 수출, 재이전, 재수출에 관한 법과 규정, 특히 무역 제재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모두 준수한다. 동 규정에 따른 법과 규정은 UN 과 EU, OSCE, 미합중국의 법과 규정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11.2. 고객은 미쉐린에게 직, 간접적으로 그 어떤 무역 제재도 위반할 위험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또 관련 “무역 제재”를 우회, 회피, 혹은 모면하기 위해 미쉐린이 공급한 제품을 공급, 판매, 배송, 환적, 수출, 재배포, 재수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11.3. 제품이 관련 무역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지역, 제재 대상자에게 또는 무역 제재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용도나 목적, 활동에 공급, 판매, 이전, 환적, 수출, 재이전, 재수출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미쉐린에게 충분히 있다면 미쉐린은 다음 중 하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1.3.1. 본 계약에 따라 즉시 계약의 이행 중단

11.3.2. 고객에게 “제품”의 최종 용도나 최종 사용자를 검증할 수 있도록 면허, 최종 사용자 증명서, 출하 또는 거래 문서 등(이에 국한되지 않음) 추가 정보나 문서 증거 요청

11.3.3.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 관해 기타 적절한 대책 강구

11.4. 고객은 본 계약일 현재 고객, 고객 그룹사, 그 각각의 이사, 간부 그 누구도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고 확인한다. 고객은 전술한 고객, 고객 그룹사, 그 각각의 이사, 간부 중에 그 누구라도 제재 대상자가 되면 이를 미쉐린에게 즉시 알린다.

11.5. 러시아, 벨라루스 및 우크라이나 내 제재 지역(크림 지역 및 도네츠크, 헤르손, 루한스크, 자포리지아 주 또는 추후 제재 가능성이 있는 우크라이나 내 기타 지역)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제재 및 수출 통제.

11.5.1.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공급된 상품 또는 기술 가운데 관련 관할권(특히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영국)에서 상기 나열된 지역에 부과하여 적용 중인 제재 체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러시아, 벨라루스 또는 우크라이나의 제재 지역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판매, 수출 또는 재수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미쉐린 그룹 산하 법인 또는 직원이 해당 제재 조치로 인해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미국 조달/미국 관할 제품을 공급받는 고객은 상기 나열된 국가 및 지역으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품을 수출, 재수출하거나, 해당 지역 내에서 또는 해당 지역을 통과하여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서 제품이 사용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1.5.2. 고객은 재판매자를 포함하여 상업 체인의 하위에 있는 제삼자가 11.5.1 항의 취지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1.5.3. 고객은 11.5.1 항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재판매자를 포함하여 상업 체인의 하위에 있는 제삼자의 활동을 탐지하기에 충분한 추적 관찰 기제를 마련하고 유지해야 한다. 고객은 또한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제삼국을 이용하여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 부과된 제재를 우회하는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징벌적인 법적 리스크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은 미쉐린 그룹의 제품, 서비스, 회사 또는 직원이 해당 제재 체계에 따라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거래 또는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미쉐린 그룹의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거래에 대해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등 적절한 실사를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11.5.4. 11.5.1., 11.5.2. 또는 11.5.3. 항 위반 시 본 계약의 필수 요소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간주되고, 미쉐린은 적절한 구제책을 모색하며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제한 없이 취할 권리가 있다.

- * 본 계약의 즉각적인 중단
- * 본 계약의 즉각적인 해지
- * (i) 계약의 총 가치나 (ii) 판매 또는 수출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

11.5.5. 고객은 특히 11.5.1 항의 목적에 위배될 수 있는 제삼자의 모든 활동을 포함하여 11.5.1 항, 11.5.2 항 또는 11.3. 항의 미준수를 시사하는 정보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미쉐린에 즉시 알려야 한다. 고객은 미쉐린이 11.5.1 항, 11.5.2 항 및 11.5. 3 항의 의무 준수 관련 정보를 서면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한 신속히 미쉐린에 제공해야 한다.

11.6. 고객은 본인이 무역 제재 또는 미쉐린 그룹 정책을 위반하여 비롯되는 그 어떤 손실이나 비용, 배상청구, 소송원인, 손해, 책임과 경비(변호사 수임료, 소송 비용 또는 합의 비용, 법정 비용)에 대해서 미쉐린을 면책하고 보호한다. 고객은 본인과 본인의 간부, 직원, 계열사, 대리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몇 차 하도급업자든 불문)가 제 11 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책임을 진다.

11.7. 고객은 미쉐린 그룹의 정책이 여기에 정의된 무역 제재보다 더 제한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음을 존중해야 한다.

12. 계약의 해지

12.1. 임의해지. 미쉐린은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하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언제든지 삼십(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면 비용 부담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는 미쉐린의 다른 권리나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2. 중대한 계약위반에 따른 해지. 미쉐린이 가지는 어떤 권리나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미쉐린은 고객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 및 기타 계약 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2.2.1. 고객이 미쉐린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14 일 이내에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경우, 또는

12.2.2. 고객의 위반은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미쉐린이 단독 재량으로 판단한 경우

12.3 해산에 따른 해지. 일방은 상대방이 법의 집행 기타 원인으로 해산될 경우, 통보 없이 즉시 본 계약 및/또는 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4 부도에 따른 해지.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 하는 한, 일방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상대방, 또는 상대방 사업의 소유주 혹은 보증인의 사업이 파산 하였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본 계약 및 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을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2.5. 지배구조 변경 또는 양도에 따른 미쉐린의 해지 권리. 미쉐린은 본 조건 및 당사자간의 관련 계약을 다음의 경우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12.5.1. 관련 법률에서 정의된 대로, 고객의 지배 구조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단, 변경 발생 전에 미쉐린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미쉐린이 서면으로 승인한 경우는 제외.

12.5.2. 고객이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지분을 미쉐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하려고 할 경우

12.6. 해지의 효력. 본 계약이 어떤 이유로든 해지되면,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마크를 이용하면 안된다. 단 고객은 본 계약 해지일 현재 재고에 남아 있는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

12.7. 고객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 해지 후 30 일 이내에 미쉐린 마크가 들어간 간판을 장소불문 모두 수거하여 미쉐린에게 반환하고 미쉐린이 고객에게 제공한 문서도 모두 반환한다. 미쉐린은 위 기간이 경과한 후 고객의 비용으로 위 회수를 할 모든 권리가 있다.

12.8. 고객이 미쉐린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 또는 그 반대의 경우는 모두 즉시 변제기가 도래한다. 각 일방은 신속한 지급을 위해 상대방과 협력하여 지급액을 산정 및 처리한다. 미쉐린은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본 계약에 따라 획득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크레딧, 보너스, 리베이트 포함)을 고객이 미쉐린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과 상계할 권리가 있다.

13. 기밀유지

13.1. 아래 13.4.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본 계약 또는 당사자 간의 기타 계약의 이행 결과로 상대방에게 공개된 기밀 정보를 본 계약 및 기타 계약 기간동안 뿐만 아니라 당사간의 해당 계약 종료 이후 2 년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13.2. 기밀 정보는 본 계약의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으로만 각 당사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본 계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범위에서만 당사자들의 직원, 계열사 및 대리인과도 공유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리고 해당 독점 금지 관련법령에 따라, 유통업체는 제 3 자로 간주되며, 따라서 제 13 조 목적상 계열사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13.3. 각 당사자는 당사자의 유사한 정보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 기밀정보를 보호 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해야 한다.

13.4. 본 계약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정보는 공개를 허용 한다:
(i) 이미 대중에 알려져 있는 정보, (ii) 해당 당사자의 부정행위로 기인 되지 않은 이유로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된 후 대중에게 알려 지게 된 정보 (iii) 정보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제 3 자의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제 3 자로부터 받은 정보 (iv) 법률, 정부기관 혹은 규제 당국 혹은 규제 기관에 따라 공개를 요구받은 정보

14. 보증 및 리콜

14.1. 일반 사항. 미쉐린은 제품과 같이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제품 보증서와 관련법률을 준수 한다.

14.2. 관련 제품 보증서에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한, 제품 보증은 제품이 고객에게 전달 되는 일자부터 시작 된다.

14.3. 적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고객은 그들의 소비자의 클레임에 관한 한 중간자가 되며 미쉐린은 모든 보증 클레임에 대해서는 고객과 직접 처리한다.

14.4. 본 보증은 고객이 본 계약 또는 미쉐린의 제품정보에 반하여 제품을 취급, 조립, 시운전, 사용 또는 수리하여 발생하는 상황을 토대로 제기되는 청구나 불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4.5. 제품 리콜. 고객과 미쉐린은 제품 리콜시 필요한 절차 및 요구 사항을 따르는 데 있어서 관련 강행법규를 준수 하는 데 동의 한다.

15. 책임의 제한

15.1. 책임의 근거가 무엇이든 고객의 배상청구는 제 15 조에 규정한 제한에 따른다.

15.2.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하는 한, 다음의 경우에 미쉐린은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 손상 또는 위약금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2.1. 원자재 수급 부족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품 공급 또는 배송 지연, 실패, 불능으로 발생하는 경우

15.2.2. 제 3 자에 대한 고객의 의무 이행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항

15.3. 아래 제 15.4.(고지사항)에 따라, 관련 강행법규에서 금지하지 않은 한,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입은 모든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미쉐린의 최대 책임은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실 손해액을 넘지 않으며 이 또한 손실 혹은 손해가 발생일로부터 역산하여 12 개월 동안 고객에게 청구한 총 금액을 초과 하지 않는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본 조건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적, 간접적, 부수적, 특별적, 징계적, 최대의, 징벌적, 다중적 혹은 강화된 손해 혹은 수익 손실, 수입 손실 또는 가치의 감소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4. 고지사항: 미쉐린은 제품을 주문하는 데 사용되는 온라인 플랫폼(또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 또는 정보)이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오류가 없으며, 바이러스 또는 유해 코드가 없거나, 다른 시스템과 호환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와 부합됨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도 보증하지 않는다.

15.5. 제 15 조에서 정한 책임의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 되지 않는다:

15.5.1. 미쉐린의 고의적인 행위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신체 상해;

15.5.2. 미쉐린의 사기 또는 미쉐린의 본 계약 고의 거절로 인한 손해;

15.5.3. 그 외 관련 강행법규에 따라 배제되지 않거나 제한되지 않는 책임

15.5.4. 특정 제 3 자의 클레임에 대해 면책하고 방어할 당사자의 의무

15.6 조치 제한.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하는 한, 해당 클레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 년 이상 경과한 후 에는 고객(또는 고객에 의한, 고객을 통한, 고객의 관리하에 클레임한 당사자)에 의해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법적 주장에 기초한 어떠한 소송 또는 청구를 제기 할 수 없다.

16. 면책

16.1. 고객의 면책. 고객은 본 계약과 당사자간의 기타 계약 관계 관련하여 미쉐린에게 발생하는 손실과 손해, 배상책임, 배상청구, 비용, 경비(법무비용 포함) 일체에 대해 아래의 경우(이에 국한되지 않음) 미쉐린을 면책한다.

16.1.1. 고객 또는 그 간부, 직원, 계열사, 대행인, 공급업자, 하도급업자의 이용, 오용, 유통, 재유통, 기타 조치(또는 비조치);

16.1.2. 고객이 사업관련 허가, 라이선스 및/혹은 승인을 습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16.1.3. 고객이 판매, 소비, 소득 또는 기타 세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거나 고객이 필수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또는

16.1.4. 본 계약 및/또는 당사자간의 기타 계약 사항 위반의 경우

단, 본 계약 및 기타 계약 관계에 따른 의무이행 시 미쉐린측의 사기, 중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16.2. 지식 재산권 면책

미쉐린은 마크의 이용 또는 제품의 판매가 3 자의 상표나 저작권, 특허를 침해한다는 주장 또는 소송으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실이나 손해, 배상책임, 배상청구, 비용, 경비(법무비용 포함)에 대해 다음을 조건으로 고객을 면책한다:

16.2.1. 고객이 마크 또는 “제품”을 본 계약 및 기타 계약 관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침해 주장이나 소송에 대해 미쉐린은 의무가 없으며,

16.2.2. 고객은 그 의무를 야기한 주장이나 소송을 즉시 미쉐린에게 알리고,

16.2.3. 미쉐린은 해당 주장이나 소송의 방어와 그것의 해결을 전적으로 관장한다. 고객은 미쉐린과 협력하여 해당 주장이나 소송을 방어하거나 해결한다.

16.3. 미쉐린이 제 16 조에 따라 고객을 면책해야 하는 주장이나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미쉐린은 고객에게 마크의 사용 및/또는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16.4. 고객은 계약에 따른 고객 데이터의 사용으로 제삼자의 상표, 저작권, 특허 또는 기타 지적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주장이나 소송에 의해 미쉐린이 입은 모든 손실, 손해, 책임, 청구, 비용 또는 기타 부대비용(법적 수수료 포함)에 대해 미쉐린을 면책해야 한다.

16.5. 본 16 절은 제삼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제삼자의 청구 또는 소송에 대한 각 당사자의 전체 잠재적 책임과 상대방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제책을 명시한다.

16.6. 제 16 조는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17. 고객의 정보사용 및 정보 보호

17.1. 고객의 데이터.

17.1.1. 고객 보증. 고객은 미쉐린에게 제공 및/또는 업로드된 모든 고객 데이터가 모든 면에서 사실이고, 정확하고, 최신이며, 완전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보증한다.

17.1.2. 고객 정보 사용 권한. 고객은 미쉐린과 그 자회사 및/또는 하도급 업체들(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제 3 의 계약자를 통한 경우)에게 미쉐린에서 제공한 제품에 관련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미쉐린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고객 정보 (고객 개인 정보도 포함)를 저장, 액세스, 처리, 복사, 실행, 제거 및/또는 삭제 하는 권한을 부여 한다. 마찬가지로, 고객은 미쉐린 및/또는 자회사 및/또는 하도급업체에게 미쉐린이 제공한 제품과 관련하여(또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증을 제시하지 않는 고객 데이터를 제거 및/또는 삭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17.1.3. 기술정보 사용권. 기술정보는 미쉐린, 미쉐린 자회사 및/또는 하청 업체가 다음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i) 본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 (ii) 고객에게 통합 정보가 아닌 개별 보고서와 같은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및/또는
- (iii) 통합정보 보고, 통계, 참조 및/또는 벤치마크의 분석, 마케팅 목적, 연구 및 향후 제품개발 목적으로, 본 계약이 유효하는 한, 기술 정보가 익명화되어 있는 경우(해당 데이터와 고객 사이에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야 함) 미쉐린 및 그 계열사와 하청업체에 관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생성 및 확장

17.1.4. 지적재산권 보호의 최대 법적 기간 동안 주어지는 위 17.1.3(iii)항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를 제외하고,

기술 정보 사용권은 본 계약 종료시에 원인에 관계없이 만료된다.

17.2. 정보 보호

17.2.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자체 목적으로 진행하는 개인 정보 처리 업무에 대해,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EU/2016/679)과 개정안 그리고 현지 관련법령을 포함해 처리 대상 개인 정보에 적용되는 데이터 보호 및 처리 법률(이하 “**데이터 보호 법률**”)의 적용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모두 준수하기로 한다.

17.2.2. 미쉐린은 데이터 관리자로서 고객과의 계약 관계와 관련된 업무를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 보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을 고객은 인지한다. 개인정보 처리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미쉐린의 합법적 이익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관련 데이터 보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고객은 정보 주체(예: 직원)에게 이러한 개인 정보 처리와 본 계약에 따라 처리된 개인 정보가 계약기간 및 법적 제한 기간 동안 보관된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한다.

17.2.3. 처리되는 데이터는 미쉐린의 담당 부서, 그리고 적절할 경우 그 위탁처리업자가 이용한다. 처리업자 중 일부는 개인 정보의 원 보유국이 아닌 EU, 미국과 인도에 소재하고 있을 수도 있다. 개인정보 이동시 적절한 보호를 위해, 유럽 집행위원회의 표준 규정이 수록된 국제 이동 계약이 미쉐린과 그 위탁 처리업자 간에 체결되어 있다. 미쉐린 그룹 내 정보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것은 프랑스 정보 보호 당국으로부터 검증 받은 그룹 내규(www.michelin.com 에 게재)에서 권장한다.

17.2.4. 개인정보가 유럽 경제지역 밖으로 이전되는 경우, 미쉐린은 표준 계약 조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적절한 안전 장치가 구현 및/또는 채택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17.2.5. 정보주체는 관련 강행법규에 의해 명시된바, 해당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접근권, 정정권, 휴대권, 처리의 제한권, 합법적 사유에 의한 이의신청 및 삭제권한을 가진다.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정보 주체는 미쉐린에 연락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관련 정보보호당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8. 불가항력.

18.1. 불가항력의 영향.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못할 경우 정당한 수행이 방지되는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2. 관련 강행법규 또는 관련규정에서 허용하는 한, 고객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이유로 미쉐린에 지불 해야하는 의무를 면제 받지 않는다.

18.3. 통보와 완화 의무. 본 계약에 따라 불가항력 상황을 이유로 항변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한 후 조속히, 단 늦어도 30 일 이내에는 상대방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일방은 해당 불가항력 상황을 이유로 불이행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18.4. 당사자들은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불가항력 상황으로 인한 본 계약의 불이행의 영향을 막고 완화해야 한다.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 하는 한, 이유를 불문하고 제품의 생산 또는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 미쉐린은 고객에 대한 배상책임 없이 재량으로 제품의 공급을 본인과 타 고객에게 배정할 권리가 있다.

19. 분쟁 해결, 준거법과 관할권.

19.1. 본 계약은 계약을 고시한 미쉐린 법인이 설립된 관할지역의 법에 따른다.

19.2. 본계약에서 제품의 국제 매매에 관한 UN 협정은 배제한다.

19.3.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 간의 협의를 통해 삼십(30)일 이내에 이러한 분쟁을 성실히 해결하려고 시도 할 수 있다.

19.4. 위 19.3.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을 발행한 미쉐린 법인이 위치해 있는 관할지역의 법원이 본 계약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해결할 관할권을 가진다.

19.5. 제 19 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강행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미쉐린은 관할 법원에서 형평법상 구제수단 또는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20. 기타 조건.

20.1. 하도급. 미쉐린은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고 본 계약의 의무와 관련한 어느 것이든 하도급 할 수 있다. 단 미쉐린은 하도급업자의 행위와 부작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0.2. 양도. 고객은 본 계약과 그에 따른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미쉐린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의 동의 없는 양도는 모두 무효이며 미쉐린은 본 계약과 그에 따른 권리 또는 그 지분을 언제든 미쉐린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20.3. 효력의 유지. 결제, 환급, 면책, 보증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무와, 해지 이후에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의무는 모두 본 계약의 해지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

20.4. 조항의 분리. 본 계약의 특정조항 또는 일부분이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 판정을 받을 경우, 그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는 나머지 계약 조항의 합법성이나 효력, 집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협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불가 상태가 된 규정의 영업적 또는 사업적 목표에 맞춰 무효가 된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대체한다.

20.5. 언어 및 통지사항. 본 계약은 일반 조건을 고시한 미쉐린 법인이 설립된 관할권의 언어로 작성되었다. 본 계약 및 당사간의 기타 계약 관계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통지 및 기타 소통은 당사자간 상호 합의된 언어 혹은 필요시 인증된 번역을 수반하여 본 계약의 언어로 작성된 것 모두 유효하고, 본 계약 서두에 명시된 주소로(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하는 다른 주소) 우편 혹은 등기우편, 특급 우편 또는 배달증명으로 송부한다. 본 계약의 언어로 보내진 통지문과 함께 제공된 인증된 번역문 사이에 충돌이 발생 할 경우, 본 계약의 언어로 된 통지문이 우선한다. 어떤 당사자도 본항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를 적절히 함으로써, 통지를 위한 주소를 변경 할 수 있다.

20.6. 감사권. 고객은 미쉐린의 요구에 따라, 재무 정보 및 기타 미쉐린으로 하여금 고객이 의무를 충실히 수행 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타 문서를 미쉐린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고객은 이러한 기록 및 문서를 본 계약 만료 또는 종료 후 최소 5 년 동안 보관한다. 고객은 이러한 모든 기록과 문서가 미쉐린 또는 제 3 자 감사인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지 72 시간 이내에 미쉐린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현장 감사는 고객의 정상 업무 시간 동안 수행된다. 미쉐린은 고객이 증빙 문서를 미쉐린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본 계약에 따른 편익을 즉시 철회할 권리가 있다.

20.7. 전체 계약. 본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하여 앞서 작성한 문서나 서신(있을 경우)에 모두 우선한다.

20.8. 체결/부분. 서명을 함으로써 본 계약은 필요한 부분 수만큼 체결할 수 있으며, 각각은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전체는 모두 합쳐 동일한 하나의 문서로 본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해 체결되었으며, 전자 전송을 통해 체결된 본 계약의 전자 서명은 물리적 서명과 동일하게 법적 구속력이 있다.

20.9. 당사자들의 관계. 본 계약은 미쉐린이 고객에게 미쉐린 제품을 판매하는 데 적용되며, 당사자 간의 프랜차이즈 관계를 구성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다. 고객은 미쉐린에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미쉐린에서 제공하는 비즈니스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 또한, 본 계약은 고객과 미쉐린 사이에 공동 투자, 합작, 파트너십, 고용 또는 기타 사업 조직 또는 대리점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0.10. 권리의 포기. 당사자가 본 계약의 특정 조항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시행하거나 행사하지 않는 것은 해당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어떠한 관습, 관행 또는 거래 과정도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0.11. 개정. 미쉐린은 관련 강행규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본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개정된 일반조건은 소통 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이용 가능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해당 업데이트된 일반 조건은 미쉐린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gtc.michelin.com/>

20.12. 충돌. 본 조건과 지역용 일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상충 또는 모호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 상충을 해소하여야 한다: 지역용 일반 조건 규정을 선 적용한 이후 본 조건 적용한다.

20.13. 본 조건 과 지역용 일반 조건의 조항과 고객 문서(예: 주문, 일반 구매 조건 등) 사이에 충돌 또는 모호성이 있는 경우 본 조건 및 지역용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